

2025년 조세변경 및 세무조사동향

Sep., 2025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 대표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HP: www.seouvietnam.com



목차

2025년 조세변경_법인세	3
2025년 조세변경_부가세	10
2025년 조세변경_세금계산서	20
2025년 조세변경_사회보험	24
2025년 조세변경_Official Letters	28
세무조사 이슈, 절차, 조세불복	37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41

법인세

- 글로벌최저한세 Decree 236/2025/ND-CP dated 29 August 2025 자로 공표됨.
- 글로벌최저한세 회계감사 및 세무결산 고려사항
- ✓ 2025회계연도부터 베트남자회사 회계결산 및 주식공시의무필요: 미지급법인세 및 법인세비용 계상검토. QDMTT 발효 주식공시 필요.
- ✓ 베트남내 구성기업 중 택일하여 QDMTT 신고시 구성기업간 비용 배분문제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지속적인 OECD행정지침의 추가 발행사항 검토
- ✓ 자회사향 이전가격세무조사 사후부과액이 자회사가 과거년도 기납부한 QDMTT에 소급영향여부(실효세율 소급해서 증가가능 여부검토)
- 2025년 2월 10일자 시행령 제20/2025/ND-CP호 - 특수관계자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관련

2025년 2월 10일 정부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를 규정한 2020년 11월 5일자 Decree 제132/2020/ND-CP호(“시행령 132”)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Decree 제20/2025/ND-CP호(“시행령 20”)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5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며, 2024년 법인세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자 유형
- ✓ 지분 투자 또는 지배 관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제외됨 (시행령 132, 제5조 제2항 d호 개정 및 보완)
- ✓ 독립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독립지점은 특수관계자 관계에 포함됨 (시행령 132, 제5조 제2항 k호 개정 및 보완)
- ✓ 특수관계자는 「금융기관법」 및 그 개정 또는 대체 법률에 따라 정의된 금융기관의 계열사로 확대됨 (시행령 132, 제5조 제2항 m호 개정 및 보완)

법인세

- 제 3자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관련 경과 규정

시행령 132호에 따라 2023 과세연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었으나, 시행령 20호에 따라 2024 과세연도부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금융기관 차입 이자비용에 대한 경과규정

- ✓ 회사가 2024 과세연도 동안 시행령 20호상 어떠한 유형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는 경우, 2023 과세연도 종료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5년에서 경과된 과세연도를 제외한 기간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비용산입함. 한편, 2024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2024 과세연도 동안 시행령 20호상 어떠한 유형의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 2023 과세연도 종료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5년에서 경과한 과세연도를 제외한 기간내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2024 과세연도 동안 시행령 20호상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고,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총 이자비용이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30%를 초과하면, 해당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해당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시행령 20 제1조 제2항은 시행령 132 제21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세무 관리 목적상 금융기관과의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해 세무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당사자 정보 제공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합니다.

2025년 조세변경

법인세

➤ 2025년 6월 14일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No. 67/2025/QH15, “신 법인세법”)은 10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확대 [Article 2]

- ✓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을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등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매출의 일정 % 과세방식(외국인 계약자세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향후 발표될 하위 법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점 변경(Clause 4, Article 3)

기존 법인세법 (Clause 1, Article 1 of Law No. 71/2014/QH13 and Article 1 of Circular No. 96/2015/TT-BTC)	신 법인세법 (Clause 4, Article 3)
기업은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베트남으로 송금할 경우에만 법인세(CIT)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업은 해외자회사의 이익이 베트남으로 송금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법인세(CIT)를 납부해야 함
상기 규정 상 “이익”의 정의가 불분명하나, 모회사에 대한 송금, 즉 배당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이익”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당기이익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회계기준 상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투자회사가 인식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필요.	

법인세

- **부동산양도이익과 일반세율적용 사업손실의 상계 허용 [Clause 3, Article 7]**

- ✓ 기존 법인세법상 기업은 손실을 발생한 사업활동과 이익을 창출한 사업활동 간에 과세소득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다른 사업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 후 남은 소득은 여전히 소득이 발생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 ✓ 기존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계 대상 일반사업이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 사업만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법인세 인정비용요건 (Clause 1, Article 9)**

- ✓ 우선 인정비용에 대한 요건으로서, 정부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현금지급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예컨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절차는 재무부에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181/2025/ND-CP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재화 및 용역의 구매(수입 재화 포함)에 대해 비현금지급 증빙(non-cash payment documents)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며, 이는 기존 2,000만동에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법인세

- 법인세 불인정 비용으로서,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채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 ✓ 비금융기관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현행 민법상 허용된 한도(현재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
 - ✓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출 요건 및 지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 이미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의 비용불인정 (단,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아직 완전히 매입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았고, 세액 환급 대상도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초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추가 (Article 10)**
 - ✓ 현행 법인세율은 20%이나, 금번 개정에 따르면 연간 총 매출이 VND 3 billion 이하이면 15%, VND 3~50 billion이면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이 특정회사의 자회사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 그 특정회사가 동일한 소규모기업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인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조세변경

법인세

-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 산업 추가 (**Article 12**)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 사업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번호	투자 분야	관련 조항	우대 세율	면제 및 감면	비고
1	첨단기술 기업; 첨단기술 농업기업; 과학기술 기업	제12조 제2항 e호	15년간 10%	면제: 4년 50% 감면: 9 년	첨단기술기업 인증 필수; 첨단기술 농업기업 인증 필수; 관할 기관의 인증서 보유 필수
2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타 디지털 기술 제품 제조	제12조 제2항 n호	10년간 17%	면제: 2년 50% 감면: 4 년	생산성 및 현지화 기준 충족 시 적용
3	중소기업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기술 지원, 인큐베이팅, 공유오피스 등)	제12조 제2항 o호	10년간 17%	면제: 2년 50% 감면: 4 년	창업 지원 기준 충족 필요
4	언론 활동 (신문 광고 포함)	제12조 제2항 u호	10% (기한 없음)	해당 없음	허가된 언론 기관에 적용

법인세

- **법인세 인센티브의 삭제 및 축소 (Article 12)**

금번 개정을 통해 법인세 인센티브가 삭제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산업단지(Industrial Park)에 대한 지역기준(location-based)의 세제 인센티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기준만으로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장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더 이상 2년간 법인세 면제 + 추가 4년간 50%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경제구역(Economic Zone) 중, 일반 지역(즉, 어려운 또는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우대 법인세율(preferential CIT rate)이 축소됩니다(17%로).**
- ✓ **총 투자금액이 VND 6 trillion 이상인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더 이상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엔 우대세율 10% 적용대상이나 폐지).**

참고: 2024년 6월 국세청이 발행한 Official Letter No. 2840/TCT-CS dated 3 July 2024와 Official Letter No. 2721/TCT-CS에 의하면, 사업확장프로젝트의 조건 중 권장지역(Location)에 대한 투자이면서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원가가 100억 VND이상 증가한 경우는 Decree No. [218/2013/ND-CP](#)에 의거한 disadvantaged area or extremely disadvantaged area에서 사업확장이 실행된 경우임. 일반 산업단지는 100억 VND이상 증가하더라도 사업확장조건으로서 충족하지 않습니다.

- **과학기술개발기금 적립 한도 상향 [Article 17]**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업, 조직, 공공서비스 기관은 **연간 과세소득의 최대 20%까지(종전에는 10%) 자체 과학기술개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 2024년 11월 26일, 제48/2024/QH15호 부가세법

- 납세자에 대한 규정 보충

새로운 부가가치세 법은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련된 납세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 베트남에 상시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내의 조직 및 개인과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기반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 ✓ 전자상거래 거래소 및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며 결제 기능을 갖춘 조직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업자 가구 및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법은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10% 세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

- ✓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단순 가공 또는 개별 생산, 어획한 제품을 판매하는 조직과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 판매 및 식재료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 ✓ 금융리스 회사가 금융리스용으로 수입한 재화가 비관세 구역 내 기업에 리스되는 경우.
- ✓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예방 및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품, 그리고 국경 주민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해 매매 및 교환되는 재화.

부가세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품목을 5% 부가가치세율로 이동:
 - ✓ 비료;
 - ✓ 해양 및 국경 지역의 어선; 농업 생산을 위한 특수용도 기계 및 장비;
 - ✓ 가공되지 않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어업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기업과 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기업 및 협동조합(상거래 목적).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을 10% 부가가치세율로 이동:
 - ✓ 증권 등록서비스, 증권 시장 조직 서비스(주식 거래소 또는 증권 거래소); 기타 증권 관련 업무.
 - ✓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우편,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 ✓ 동물원, 식물원, 공원, 거리 녹지, 공공 조명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 대한 추가 규정(오류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벌금은 별도로 과세)
 - ✓ 재화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이 결정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이 결정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부가세법

- 부가가치세(VAT) 0%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 수출 재화에는 베트남에서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비과세 구역 내 조직에게 판매되어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가 포함됩니다.
- ✓ 수출 서비스에는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비과세 구역 내 조직에게 직접 제공되어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직접사용서비스의 의미는 불확실.
-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개정 및 보충
- ✓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대가의 현금 지급에 대한 상한선 금액기준을 제거하였으며, 상세규정은 시행령이나 추가규정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부가세법은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매입부가가치세 금액에서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 ✓ 오류가 발생한 과세 기간에 수정신고가 세액 증가나 환급 세액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오류 발생 과세기간을 재수정 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 ✓ 오류를 발견한 과세 기간에 수정신고가 세액 감소를 초래하거나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매입부가가치세 금액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해당 오류발견시점에 수정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부가세법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의 매매에 참여하거나 불법 세금계산서 또는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
- ✓ 허위 거래를 창출하는 행위;
- ✓ 사업 중단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합법적인 경우 제외);
- ✓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요구된 대로 전송하지 않는 행위;
- ✓ 세금계산서 정보 시스템을 허위로 접근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 ✓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 ✓ 세금 회피 또는 환급 부정취득을 위한 특수관계자 간의 공모 행위.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일반 조건 보충:

판매자는 환급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규정에 근거해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판매자의 매출부가세 납부를 매입부가세의 환급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거래자와의 매입거래의 위험성 증대.

부가세법

•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된 상품매출재화에 대해서는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계무역자는 부가세환급 불가.
- ✓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분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수출 재화 및 서비스의 분배비율은 (수출재화 및 서비스의 매출/해당 환급 기간의 총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매출)로 나눈 비율이며 이를 적용하여 매입부가세를 분배됩니다.
- ✓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환급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가 이전 기간의 수출 재화 및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는 다음 기간에 환급대상 매입부가세에서 여전히 제외된 후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 투자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 ✓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활동의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 활동의 완료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시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금융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투자 프로젝트의 원자재 처분 수익은 수익발생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 기업 소유권 이전,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분리 또는 운영 종료를 사유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폐지됩니다(단, 해산 또는 파산의 경우는 제외).
- ✓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부가세법

➤ 2025년 6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한 부가세법(No. 90/2025/QH15, “신 부가세법”)

신 부가세법은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에 국내이동하는 수출업 추가 [**Clause 1 a, Article 9**]

기존 부가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로 해외, 보세구역, 해외로 이동하는 비행기 및 duty-free shop으로 판매되는 재화를 나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이동하는 수출(on-the spot exports) 재화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내이동하는 수출업 제도는 베트남 기업이 외국기업과 제조 (또는 임가공) 계약을 맺은 후 제조 (또는 임가공) 활동의 결과물인 재화를 계약 당사자(외국기업)에게 인도(수출)하는 대신 외국기업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의 타 기업에 인도하는 거래로서, 최종 수출 전 추가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관세당국은 이러한 재화의 국내이동에 대해 수출거래가 아닌 내수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국수출입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에게 실무상 큰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관세법은 내국수출입 제도를 공식화하여 이러한 재화의 국내 이동 시 수출 및 수입세관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경을 이동하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관세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고, 부가세법은 국내이동하는 수출업 거래를 영세율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령간의 정합성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2025년 조세변경

부가세 시행령

- 2025년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PIT)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2025년 4월 2일 자 시행령 제82/2025/NĐ-CP호

시행령에 따르면, 2025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매월 신고하는 경우) 및 2025년 1분기, 2분기의 법인소득세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9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기업이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에 2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및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5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6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1분기(분기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2분기(분기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참고: 위 규정은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조직에 대해 2025년 법인세(CIT) 첫 번째 및 두 번째 분기의 예납법인세 납부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 ✓ 연장 기간은 세무 관리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 종료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 **2025년 6월 30일자 시행령 제174/2025/ND-CP호 – 부가가치세(VAT) 인하에 관한 규정**

이 시행령은 기존 정책에 비해 2% 부가가치세 인하 대상 품목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범주 외에도, 석유류 제품, 화학 제품, 운송 및 물류 서비스, 정보기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새롭게 VAT 인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 VAT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중,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2% 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해당 품목은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석유 제외): 해당 품목은 부속서 I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율인하 적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 **2025년 7월 1일자 시행령 제181/2025/ND-CP호 – 비현금 외 지급증빙에 관한 세부 지침**

비현금지급 증빙의 보유 의무(Clause 1, Article 26):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재화 및 용역의 구매(수입 재화 포함)에 대해 비현금 지급 증빙(non-cash payment documents)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현금지급 증빙"이란 2024년 5월 15일자 시행령 제52/2024/ND-CP(비현금 지급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현금 외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단순히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송금증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시행규칙(Circular)

- 재무부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자)
- 부가가치세 0% 세율 적용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제4조)
 - ✓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1/2025호 제17조에 따라 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을 판단하여야 함.
 - ✓ 국가 관리 기관이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시행령 제181/2025호 제18조에 따른 0% 부가가치세율 적용 요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시해야 함.
 -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되는 재화의 경우, 납세자는 시행령 제181/2025호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을 제공해야 함.
- 매출액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매출액의 일정비율 방식에 따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은(직접법 적용) 본 고시에 첨부된 부속서 1에 명시되어 있음.
 - ✓ 사업자가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재화 및 용역을 영위하는 경우, 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만약 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체 과세 매출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해야 함.
- 외국인계약자/개인을 대신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제6조)
 - ✓ 베트남 내 조직이 외국인 계약자나 외국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것)을 베트남에서 납부하는 경우, 베트남내 원천징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측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외국인을 대신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은 법에 규정된 국가 예산 납부 영수증임.

부가세 시행규칙(Circular)

-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산정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제7조)
- ✓ 사업자가 한 달 또는 분기 동안 재화 및 용역을 수출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를 한 경우, 수출매출비율을 근거로 한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산정에 관한 지침이 제공됨(부속서 II 참조).
- ✓ 또한 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생산 및 용역 공급에 대한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산정에 관한 지침이 제공됨(부속서 III 참조).

세금계산서 관련

➤ 2025년 3월 20일 시행령 제70/2025/NĐ-CP – 2020년 10월 19일 시행령 제123/2020/NĐ-CP의 개정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2020년 10월 19일에 발효된 시행령 제123/2020/NĐ-CP를 개정하고 보충하는 시행령 제70/2025/NĐ-CP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8일, 국세청은 시행령 제70호의 새로운 내용을 담은 공식서한 제348/CT-CS를 발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시행령 제70호에서 중요한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업데이트입니다.

- 규제 대상 추가 (제2조 및 제8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 보충:

- ✓ "베트남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공급자;
- ✓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는 외국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는 VAT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종류 보충 (제8조)

- ✓ 수출 가공 기업의 세금계산서 종류에 대한 규정 보충: 수출 가공업과 다른 비즈니스 영업 활동을 하는 EPE(수출 가공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직접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sale invoice를 사용하고, 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VAT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전자 매출청구서(commercial invoice) 보충: 전자 매출청구서는 해외로 재화수출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직 및 개인(수출자)이 사용하며, 수출자는 세무 당국에 전자 매출청구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전자매출청구서 발행조건 미비시 수출자는 전자 VAT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Sale invoice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한 규정 보충 (제9조)
- ✓ **수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보충** (수출 가공 포함): 전자 매출청구서 또는 전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sale invoice를 발행하는 시점은 판매자가 정하되, 물품이 세관신고를 통과한 날짜로부터 1영업일내에 발행합니다 (제1항).
- ✓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보충: 국내 서비스발행시점과 유사하게, 서비스 완료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며,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제2항).
- ✓ 특정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제4항)
- **대량으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시:** 기업과 고객, 파트너 간의 데이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양 당사자 간의 데이터 조정이 완료된 시점이며, 이 시점은 매출발생 후 익월 7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 후 7일 이내 또는 합의된 기간이 끝난 시점 후 7일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 텔레비전 광고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은행 서비스(대출 활동 제외), 국제 송금, 증권 서비스, 전자 복권, 도로 사용료 징수 등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무부의 지침에 따른 기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 **소매업 및 음식 및 음료업의 당일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삭제:** 모든 회계 활동이 본사에서 합산회계처리되고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만 하는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업 및 음식 및 음료업에 대해서는 이전의 당일내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시간발행이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규정 개정 (제19조)
- ✓ 오류 발행된 세금계산서 취소 규정 삭제

현재 규정: 2020년 시행령 제123/2020/NĐ-CP에서는 판매자가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어 구매자에게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오류가 있는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디지털 서명과 함께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규정은 삭제됩니다.

- ✓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교체하기 전에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 보충:

현재 규정인 2020년 시행령 제123/2020/NĐ-CP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거나 교체발행할 때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정에 의거하면, 구매자가 기업, 경제 조직, 기타 조직, 사업 가구 인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하거나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 재화나 서비스 반환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재화 반환 시: 구매자가 모든 재화 또는 일부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구매한 재화의 가치가 변경되는 교환 포함), 판매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엔, 구매자가 재화 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2025년 조세변경

-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제70/2025/NĐ-CP호」 요약 비교

- ✓ 연간 매출이 10억 동(VND)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DB와 연계된 POS(전자금전등록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2026년 1월 1일부터)

제11조. POS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다음과 같은 사업자(개인 또는 가계사업자 포함)는 POS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

- ✓ 제51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9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 ✓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 ✓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예: 쇼핑몰, 슈퍼마켓, 소매점(자동차·오토바이 제외), 음식·음료, 식당, 호텔, 여객 운송,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예술·오락·영화, 기타 개인 서비스 등)
- 2026년 1월 1일부터 → 개인사업자는 추정과세 방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됨:

개정 부가가치세법(2024년 제48/2024/QH15호) 제5조 제25항: 연간 매출이 2억 동 이하인 개인 및 가구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 납부 방식 요약 (2026년부터 적용)

사업규모	과세 방식	요건
연매출 ≤ 2억 동	면제	세금 신고 불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연매출 > 2억 동	신고방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기 세금 신고
모든 개인사업자	정액납세 방식 폐지	2026년부터 정액납세(추정과세) 금지
특정한 경우의 개인사업자(예: 일시적 사업 등)	개별 신고방식	비정기 임대, 일회성 사업활동 등 개별 과세 적용

사회보험관련

▶ 사회보험 개정사항

2024년 9월 26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험법(No. 41/2024/QH15)은 2025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험 의무 적용대상 확대 (Clause 1, Article 2)**

의무 사회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범주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무기한 근로계약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직무, 급여, 보수 및 일방 당사자의 관리·감독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됩니다.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업의 경영자, 감사, 국가자본대표, 기업자본대표, 이사회 구성원, 총괄이사(CEO), 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사, 그리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법률상 선출된 기타 **경영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자**

✓지역(읍·면·동)의 비상근 직원

✓정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소유주

✓군 소속 공무원

✓상근 민병대원

✓해외에 주재하는 베트남 외교사절단 구성원의 배우자로서 재직 기간 중 국가예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자

사회보험관련

• 기준임금(reference level) 도입에 따른 구체 규정 – 기존 기본급 대체

2024년 사회보험법은 일부 사회보험 급여 및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본급을 대체하는 ‘기준임금(reference level)’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질병 요양 급여수당:** 1일당 급여는 기준임금의 **30%** (2024년 사회보험법 제46조 제3항)
- ✓ **출산 관련 일시금:** 자녀 1인당 **기준임금의 2배**, 출생·위탁·입양 시점의 월 기준임금 적용 (해당 조항 제1, 2, 3항)
- ✓ **산후 요양 급여수당:** 1일당 급여는 기준임금의 **30%** (제60조 제3항)
- ✓ **장례비지원:** 사망 시점의 월 기준임금의 **10배** (제85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 ✓ **유족연금:** 가족 1인당 매월 기준임금의 **50%**, 부양가족일 경우 **70%** (제87조)

기준임금(reference level)이란, 특정 사회보험 급여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정부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국가예산 및 사회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7조)

또한, 2024년 사회보험법 제141조 제1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급여기준(기본급)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본 법에서 규정한 기준임금은 법정급여기준과 동일하다. 법정급여기준이 폐지된 이후에는 기준임금이 해당 법정급여기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현재, 제73/2024/NĐ-CP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적용 중인 법정급여기준(기본급)은 월 2,340,000 VND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사회보험법상 기준임금도 동일하게 **2,340,000 VND**로 적용됩니다.

사회보험관련

- 결정 제61/QĐ-TLĐ호 (2025년 7월 29일자)
베트남 노동총연맹 - 노동조합비 인하에 관한 결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 비국영기업, 비공공기관, 협동조합, 베트남 내 외국조직, 해외 노동조합 조합원:사회보험(SI) 기준 급여의 0.5%, 단, 법정 기본급의 10%를 상한으로 함.
- ✓ 사회보험 기준 급여가 없거나 강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조합원:고정액 납부, 단 법정 기본급의 0.5% 이상이어야 함.
- ✓ 사회보험 급여 수급자 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의 조합원:해당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 면제.

➤ 2025년 5월 17일부터 발효되는 제198/2025/QH15호 국회 결의 – 민간 부문 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

- 본 결의에 따라 정부는 세금, 수수료, 비용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부문 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SME)**에 대해 최초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및 기타 기업·조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 ✓ **혁신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투자펀드 운용사, 혁신 스타트업 지원 중간기관이 혁신 창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 2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4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면제 및 감면 기간의 산정은 법인세법에 따름)
- ✓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 지분, 출자권리, 주식 및 지분 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해 → 개인소득세(PIT) 및 법인세 전액 면제
- ✓ 혁신 스타트업 기업, R&D 센터, 혁신센터, 혁신 스타트업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임금소득에 대해 → 2년간 PIT 면제, 이후 4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 ✓ 중소기업(SME)에 대해 → 최초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 ✓ 대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부담한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은 →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 가능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 OL

- 2025년 2월 28일자 국세청 공식 서한 제916/TCT-CS호: 시험 생산 제품 판매 수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 적용 시점

공식 서한에 따르면, 시험 생산 제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이 고정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으로 기록되는 경우(고정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수익은 프로젝트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 적용 시점(세금 면제 및 세금 감면 기간)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2월 10일자 룡안 세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한 번호 496/TCT-CS는 세관 당국의 세무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에 관한 것입니다.

공식 서한 496에 따르면, 세관 당국의 세무 결정에 따라 납부된 부가가치세(VAT) 금액(사기 또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 경우)은 전액 매입부가세 공제됩니다.

세관 당국이 결정한 수입관세 부과액(사기 또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 경우)은 법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 비용에 포함됩니다.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L

- 투자 프로젝트 이전 시 수입 물품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지침에 관한 세무총국(GDT)이 발행한 2025년 2월 28일자 공식 서한 번호 137/PCT

이 공식 서한에서는 전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프로젝트에서 수입 면세 혜택을 받았던 제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신고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입관세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이는 **2020년 제219/2013/ND-CP 제4조 제1항 및 2020년 제219/2013/TT-BTC 제6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증빙문서(예: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확인문서)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국내이동하는 내륙 수출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관한 지침에 관한 2024년 12월 17일자 세무국(GDT) 발행 공식 서한 번호 6007/TCT-CS

공식 서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 상인이 지정한 수출 가공 기업(EPE)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내륙 수출로 간주되며, 계약 조건과 은행을 통한 결제가 충족될 경우 0%의 매출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재무부(MOF)가 보세창고로의 내륙 수출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관한 지침에 관해 발행한 2025년 2월 17일자 공식 서한 번호 1872/BTC-TCT

공식 서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보세 창고에 운송하고 상품을 판매 및 배송하는 경우, 이는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게 수출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수출품, 또는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재화판매와는 다르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재화판매들은 0%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L

- 룡안 세무국이 건설 기간 동안 토지 및 인프라 임대 비용에 대해 발행한 2025년 2월 12일자 공식 서한 번호 549/CTLAN-TTHT

공식 서한에 따르면, 건설 기간 중 발생한 토지 임대 비용과 인프라 임대 비용은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장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건설이 완료되고 사업이 시작된 후에 상각하여 공제비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최대 3년 동안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서한의 지침은 회계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VAS(베트남 회계 기준)에 따라 G&A 비용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공식 서한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 20일자 푸옌성 세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한 번호 473/CTPHY-TTHT(Facebook 및 Google 광고 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

공식 서한에 따르면,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와 Google Asia Pacific Pte. Ltd.가 발행한 청구서(commercial invoice)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사업자로서 세금 등록을 하고(tax on the Foreign Suppliers' Portal at: etaxvn.gdt.gov.vn에서 확인가능함), 수익의 일정 %를 납부하는 방식에(직접법방식)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외국 공급업체의 청구서로, 이는 구입자가 매입부가세공제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OL

➤ 2025년 4월 4일자 제244/CCTKV17-QLDN1호 – 판촉비용에 관한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회사가 판매실적보상, 판촉, 거래 할인, 대금결제 할인 등의 명목으로, 또는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사업자(추정과세 대상 가계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제40/2021/TT-BTC호 통칙 부속서 1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촉비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할 것;

제96/2015/TT-BTC호 통칙 제4조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회사의 광고 비용이 실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회사 이름, 주소, 세금 코드, 지불 서류 등의 유효한 송장 및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5일자 제4370/BTC-DNTN호 – 행정구역 변경 시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기업, 가구사업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및 협동조합 그룹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단지 행정구역 변경만을 이유로 등록된 주소 정보를 갱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L

➤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5년 7월 2일자 공식 서한 2200/CT-CS

공식 서한 2200/CT-CS 는 외국인 계약자 세금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이 공식 서한은 Intel Corporation, Apple Inc. 및 HP Inc.의 외국인 계약자 세금 적용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 circular 103에 의하면,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수출을 위한 수입"(내륙 수입/수출) 형태로 베트남에 상품을 공급하고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상품을 가공하여 외국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베트남 내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베트남 영토에 반입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국제 상거래 조건(인코텀즈)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 계약자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국제 운송, 환적, 환적, 창고 보관을 지원하거나 다른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소비 소득을 창출하지 않고 대신 가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세 창고 또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를 보관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법인은 외국인 계약자 세金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L

▶ 박닌성 세무국의 2025년 7월 22일자 공식 서한 915/BNI-QLDN1

박닌성 세무국의 2025년 7월 22일자 공식 서한 915/BNI-QLDN1은 교대근무 중간식비 수당에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PIT)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5일부터 고용주가 교대 근무 중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조리, 식사 구매 또는 식사권 제공) 해당 비용은 과세 대상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 자격 및 수당 수준이 근로 계약, 단체 노동 협약 또는 고용주의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전에 적용되었던 회람 제26/2016/TT-BLĐBXH에 따라 1인당 월 730,000동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내부 문서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공식 서한은 기업이 세무 조사 시 준수를 보장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부 규정의 특정 조항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 무료 샘플 상품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에 관한 국세청의 2025년 7월 18일자 공식 서한 제2541/CT-CS호

투자 입지로 인해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상품(도구, 자재, 완제품)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무상 상품의 가치는 인센티브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은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L

- 하이퐁 세무국, 2025년 7월 8일자 공식 서한 84/HPH-QLDN1호, 비관세 구역 서비스 부가가치세율 명시

2025년 7월 8일, 하이퐁 세무국은 푸흥 무역물류 주식회사(Phu Hung Trading and Logistics JSC)의 비관세 구역 내 사업체에 제공되는 폐기물 수거, 운송 및 취급 등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식 서한 84/HPH-QLDN1호를 발행했습니다.

시행령 181/2025/ND-CP 및 회람 69/2025/TT-BTC에 따라, 비관세 구역에 위치한 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조건 하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서비스는 비관세 구역에 위치한 사업체에 직접 제공되어야 하며,
2. 해당 서비스는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비관세 구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합니다.

적격 서비스의 예로는 수출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운송, 물류, 창고, 적재/하역 및 관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생산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는 비관세 구역 내에서 제공되더라도 0%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퐁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비관세 구역에 위치한 기관에 폐기물 수거, 운송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생산 및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지 또는 수출 생산과 관련 없는 기타 활동에 사용되는지)을 명확하게 결정하여 위에 언급된 법적 규정에 따라 적절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L

- 빈롱 세무국, 2025년 8월 24일자 공문 제434/VLO-QLDN2호, 후불 거래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명시

빈롱 세무국은 2025년 8월 24일, 발전공사 1호의 자회사인 두옌하이 화력발전회사에 후불 또는 할부 결제 조건으로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공문 제434/VLO-QLDN2호를 발행했습니다.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및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 2천만 동(VND) 이상의 구매 건에 대해 후불 또는 할부 결제 조건으로 결제하는 경우,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서면 계약(계약서 또는 별지)이 있고 지불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지불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체가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공제된 부가가치세는 조정 및 감액되어야 합니다.
- 지불기한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서 또는 별첨에 명시된 지불기일까지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빈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유예 조건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계약서 또는 별첨에 명시된 지불기한 시점에는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조정 및 감액했습니다.

이후 지불기한 이후에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한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자격을 갖추려면 계약서 또는 별첨에 명시된 지불기일 또는 그 이전에 비현금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비현금 결제 방식이라도 지불이 늦어지면 해당 거래에 대한 공제 자격이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5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L

- 동나이성 3지역 세무국이 2025년 8월 26일자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공식 서한 4421/TCS3-QLDN2호를 발행했습니다.

2025년 8월, 동나이성 3지역 세무국은 Phat Dai Phong Co., Ltd.의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 송장 발행 시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식 서한 4421/TCS3-QLDN2호를 발행했습니다.

전자 송장 관련 법령 123/2020/NĐ-CP를 개정하는 법령 70/2025/NĐ-CP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선불 또는 서비스 제공 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류 서비스와 같이 대규모로 빈번하게 제공되고 고객과의 데이터 조정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연기할 수 있지만, 늦어도 다음 달 7일 이전 또는 합의된 청구 주기 종료 후 7일 이내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물류 서비스에 관한 법령 163/2017/NĐ-CP를 인용하여, 기업의 도로 운송 서비스가 법률상 물류 서비스로 인정되고 앞서 언급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표준규정, 즉 서비스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본사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불가

2024년 10월 7일자 공문 제1099/CVL-QLLD호에 따르면, 흥옌성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고용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베트남 내 기업으로 파견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이 지침은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를 규정한 152/2020/NĐ-CP호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며, 해당 시행령은 아래 두 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 동일 그룹/회사 내에서 내부파견되는 경우.

세무조사 이슈

- 주요 세무조사 영역
 - 조세면제혜택 해당여부(예컨대, 조세면제 조건을 준수했나? 사업확장신규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 업무관련성 검토(예컨대, 비용의 업무관련성, 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해 실제로 수령한 산출물과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적격하고 적법하지 않은 비용(노동법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한 수당에 대한 비용불인정, 노동허가증없는 급여의 비용불인정, 수입면장이 없는 수입원재료비용, 5백만동이상의 현금지급비용, 무등록자산으로부터 비용계상, 사업목적에 위배한 영업관련비용 등) ;
 - 관련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문서를 비치하고 적격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수입재화 청산보고서와 일치하는 재고자산수불명세서, 적격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약서, 거래합의서 등)
 - 개인소득세(예컨대, 본사 출장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한국내 수령소득에 대한 베트남내 합산신고, 노동법을 초과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한 수당에 대한 근로세 과세)
 - 이전가격 과세제도(비교가능 동종회사의 업종 평균이익율 적정성)
 - 외국인계약자세(과세권 면제여부, 적용세율, 조세조약 적용가능여부)
 - 부가세(매입부가세환급사유 및 조건 검토, 수출과 국내매출 겸용시 매입부가세 안분근거, 휴면회사로부터 구입한 매입부가세)

- **회사의 대응방안**

- 세무신고의 적법한 작성 및 적기납부
- 세법 규정의 변경시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세무진단을 수행
- 검토/세무진단 수행 후 회사의 관련규정 및 처리지침 변경실행
- 조세조약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 면제가능성 검토(예컨대, 지분양도소득세의 과세권 면제여부, 단순 수입재화 판매업자에 대한 FCT 비과세)
- 세무조사전 증빙서류의 사전준비 필수
- 조세불복절차의 가능성 검토
- 발생비용의 업무관련성 소명준비
- IRC의 회사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및 변경사항 발생여부 검토

세무조사 절차

공문명	발행자	내용	발행시기
세무조사계획통지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주안점, 세무조사 일정 및 세목을 포함한 세무조사계획안내	세무조사대상통지서 발행일 30영업일 이전에 세무서 내부세무조사기획 완료함. 사전 서류심사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세무조사대상통지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대상의 대상세목 및 담당세무공무원, 세무조사일정 고지	세무조사대상통지서 발행후 3영업일 이내 발송해야 함
세무조사개시 결정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조사개시일정, 조사기간, 대상세목 대표이사에게 고지	실시일 현장에서
세무조사 실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 대상통지서에 근거해 세무조사실행.	세무조사개시결정 후 10영업일(세무감사는 30영업일)내 현장조사기간가능
세무조사 연장통지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필요시 세무서의 연장결정 후 통지	세무감사는 1회에 한해 10영업일기간동안 연장. GDT경우 세무감사는 첫번째 45영업일내, 2회째는 30영업일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초안 전달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시 제공된 자료, 세무조사실행 발견사항통지 및 답변수령	세무조사시 발견사항, 납세자의 답변의견 기재 후 세무조사기간 후 5영업일내 제출 및 상호날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Tax audit minutes) 날인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 결과 발생한 세금추징세금 및 가산세	납세자의 답변의견, 설명기재 후 날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내부확정	관할세무서/상위관청	세무조사 결과 발생한 세금, 가산세, 세무서내 보고확정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체결 후 3영업일내 내부보고 완료. 수정보완 내부발생시 납세자에 수정 결과통지서 재함의.
세무조사 부과액 결정서	관할세무서/상위관청	국세청 납부금액고지(추징세금 및 가산세), 납부기한 확정, 가산금은 자진신고 후 세무서 사후확정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납세자의 불인정의견 기재없으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체결 후 7영업일내 발행. 불인정의견 수령시 최장 2개월내 부과액결정서 발행.

-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정기세무조사
- 세무감사: 관할세무서/상위관청의 세무조사이슈 특정정밀감사

조세불복절차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는 행정부에 대한 불복절차와 무관하게 또는 중복되게 진행될 수 있음.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서우는 베트남 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5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oitte 베트남에 근속한 최준회계사, pwc베트남에 근속한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호치민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 한국/베트남 CPA)

Tel: 024-3776-7050

Mobile Phone: +84 98 548 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

김형준 회계사

(호치민 지점장, 한국 CPA)

Tel: (+84)-28-628-628-00

Mobile Phone: +84 90 247 7335

Email: kimhj@seouvietnam.com

주소: 14th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최준 회계사

(호치민지점파트너, 한국/베트남CPA)

Tel: (+84)-28-628-628-00

Mobile Phone: +84 813 767 067

Email: junchoi@seouvietnam.com

주소: 14th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